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20호

「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정리추경예산안 처리 이후 집행부에 최소 예산집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동을 도모하고, 상주시의 재정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일정을 확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“12월 4일”에서 “11월 27일”로 변경 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)에게 제출

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, FAX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: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조 례 안 내 용	의 견 내 용	비 고